

(성남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-참조2)

성남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2003. 10. 22.

제 출 자 유철식의원등 10인

□ 제안이유

-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“다만, 위원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”를 삭제

(안 제3조 제1항)

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성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 다만, 위원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. <u>다만, 위원중 2인을 성남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</u> ② (생 략) ③ (생 략) ④ (생 략)	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